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580호 2017. 2. 22.(수)

선 결	기관의 장

규 칙

거창군 규칙 제121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3

훈 령

거창군 훈령 제406호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5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7-18호 거창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5
 거창군 고시 제2017-19호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8
 거창군 고시 제2017-20호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
 거창군 고시 제2017-21호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2
 거창군 고시 제2017-22호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4
 거창군 고시 제2017-2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26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7-253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
 입법예고 28
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7-4호 군의원 주식 매각 공개 목록 공고 33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거창군수양등인

2017년 2월 22일

거창군 규칙 제1218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

의안 번호	2017~2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7. 2. 10.
제 출 자	행정과장

1. 폐지이유

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,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8조제1항이 개정('15. 11.19. 시행)되어 당초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던 지방공무원의 징계등 양정에 관한 기준이 행정차지부령인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('15.11.19.)으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8조
-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7. 1. 12.~2. 01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도내 폐지현황
 - 완료(1): 진주
 - 입법예고(4): 거제, 통영, 양산, 함안

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거창군수양동인

2017년 2월 22일

거창군 훈령 제406호

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거창군 기획통제규정”을 “「거창군 기획조정 통제규정」”으로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“(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)”를 “(자치법규 제정, 개정 또는 폐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개폐”를 “개정 또는 폐지(이하 “개폐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한함”을 “한정함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“별표 1”의 경우”를 “경우”로 “하여야 하고 그 대상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.”를 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“착안”을 “유의”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당해 자치단체 사무”를 “자치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규를 심사함에 있어”를 “자치법규를 심사할 때”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

서식에 따라 요청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“시달된 때”를 “전달된 경우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자치법규 등의 관리) ①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·발령할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할 경우 책자형태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“타기관”을 “다른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”를 “경상남도”로 “질의코자”를 “질의”로 “시행토록 하고”를 “시행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삭제하고,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법무행정의 처리는 <u>거창군 기획통제규정</u>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2조(범위) ----- 「<u>거창군 기획조정 통제규정</u>」 ----- -----<u>따른다</u>-----</p>
<p>제3조(자치법규 제정 및 폐지) ① 조례, 규칙(이하 "자치법규"라 한다)의 제정, <u>폐지</u>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.</p> <p>② 각 실과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의뢰를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정, 폐지의 사유서 1부 2. 제정, 폐지(안) 1부 3. 신.구조문 대비표(개정된 경우에 <u>한함</u>) 1부 4. 제정, 폐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 개요 1부 5. <u>기타</u> 참고사항 <p>③~④ (생략)</p> <p>⑤ 선행절차이행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"<u>별표 1</u>"의 경우에 사전승인 또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법규의 내용이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입법예고 <u>하여야 하고 그 대상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</u>.</p> <p>⑥~⑦ (생략)</p>	<p>제3조(자치법규 제정, 개정 또는 폐지) ① ----- -----<u>개정 또는 폐지(이하 "폐지"라 한다)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----- 2.----- 3.----- <p><u>한정함</u>---</p> <p>4.----- -----</p> <p>5. <u>그 밖의</u>-----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 -----<u>하여야 한다</u>-----</p> <p>⑥~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사) ① 각 실과소로부터 심사의뢰된 "자치법규안"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에 <u>착안</u>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당해</u> 실과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구, 형식, 체계 등 형식적 사항 적합여부 2. 상위법령 저촉여부 3. <u>당해 자치단체 사무</u>에 관한 사항인 지 여부 4.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,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규정 여부 5. 사전입법예고 대상인지 여부 <p>② 기획감사실장은 <u>법규를 심사함에 있어</u>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<u>당해</u> 실과 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4조(심사) ①----- 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<u>유의</u>----- ----- -----<u>해당</u>----- ----- 1.----- ----- 2.----- 3. <u>자치사무</u>----- ----- 4.----- ----- 5.----- ② -----<u>자치법규를 심사할 때</u>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 -----</p>
<p><신 설></p>	<p>③ <u>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다.</u></p>
<p>제5조(법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연구) ①~② (생략) ③ <u>제7조의 규정에 의한</u> 질의내용 등이 <u>시달된 때에도</u> 제2항과 같다.</p>	<p>제5조(법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연구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<u>에 따른</u>----- <u>전달된 경우</u>-----</p>
<p>제6조(자치법규의 발간 및 지도) ① <u>거창군자치법규집</u> 추록은 년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<u>기획감사실장은</u> 수시 법령집 및 관보, 자치법규집의 가제정리 및 활용 상황을 지도 확인한다.</p>	<p>제6조(자치법규 등의 관리) ① <u>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등을 공포·발령할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 ② <u>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할 경우</u> 책자 형태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법령 등의 질의) ① 각 실과소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읍면 또는 <u>타기관</u>이나 주민으로부터 법령 등의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최종 결재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 처리한다.</p> <p>②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부처, <u>도</u> 또는 외부기관에 <u>질의코자</u> 할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서류를 갖추어 <u>시행토록 하고</u>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질의요지 2. 질의자의 의견서 3. 관계법령의 발췌 4. <u>기타</u> 참고사항 	<p>제7조(법령 등의 질의) ① -----<u>다른 기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경상남도</u>-----<u>질의</u>----- --<u>각 호</u>-----<u>시행하고</u> ----- 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----- 2.----- 3.----- 4. <u>그 밖의</u>-----
<p>제10조(자치법규 등의 공포) ① 조례, 규칙, 훈령 등의 일련번호는 기획감사실에 비치된 공포대장에 의거 누년번호를 부여한다.</p> <p>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, 규칙 등의 공포절차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<삭 제>

[별표 1]

사전승인 또는 협의사항

조 례 내 용	근 거 법	사전승인 또는 협의권자
1.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	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3 항	재 정 경 제 원 장 관
2. 회계관계에 관한 사항	감 사 원 법 제 49조	감 사 원 장
3.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 의 명칭과 구역변경, 폐 치 분합	지방자치법 제 4 조	내 무 부 장 관
4. 군 및 읍면 사무소의 소 재지 변경	지방자치법 제 6 조	도 지 사
5. 직속기관의 설치	지방자치법 제104조	내 무 부 장 관
6. 지방채의 발행	지방자치법 제115조	내 무 부 장 관
7. 지방공사의 설립	지방자치법 제149조	내 무 부 장 관

<삭 제>

[별표 2]

법규안의 사전예고 대상 및 방법

1. 예고대상

- 가.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
- 나.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계되는 조례
- 다.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조례
- 라.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조례
- 마.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조례 및 규칙

2. 예고방법

- 가. 예고수단 : 게시공고 방법을 지양하고 반회보나 일간신문 등 전체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되, 이해관계단체(개인)에는 필수적으로 통보
- 나. 예 고 문 : 별지 제1호 서식 참조

3. 예고기간

- 주민의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20일 이상 예고

4. 예고결과

-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조례규칙심의회에 반드시 부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최종안을 작성 군수의 결재를 득한다.
- 의견제시주민에게 의견 반영여부 통보(안 확정시)

[별지 제1호서식]

안건명 :

요청기관 :

※ 전부개정안의 경우,

- 1) 4단 대비표 중 왼쪽 두칸을 아래 양식(글꼴, 크기 등)에 따라 조문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해당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을 아래 양식(별첨)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현	행	개	정	안	법제처 검토안	검토의견

[별 첨]

관련 법령

안건명 :

요청기관 :

※ 제정안의 경우,

- 1) 3단 대비표 중 맨왼쪽칸을 아래 양식(글꼴, 크기 등)에 따라 조문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) 해당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을 아래 양식(별첨)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정 안	법 제 처 검토안	검 토 의 건

[별 첨]

관련 법령

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의안 번호	2017~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	2017. . .
제 출 자	기획감사실장

1. 제안 이유

법제처에서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의 자치법규 심사를 지원하는 “자치법규 입법컨설팅” 대상에 선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의뢰 근거 신설(안 제4조제3항)

○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나.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함.(안 제3조제5항, 제10조, 별표 1, 별표 2)

- (1)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삭제
- (2) 공포에 관한 사항 삭제

다.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가제정리 폐지에 따라 관련내용 정비(안 제6조)

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순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제29조의3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거창군 고시 제2017-18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7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거창군 고시 제2008-43호(2008.09.17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고시합니다.

2017. 02. 16.

거 창 군 수

1. 사업 개요

종류	명 칭	위 치		시 행 규 모						시 행 구 간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읍·면	리	등급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시 점	종 점		
교통 시설	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설도로공사 (군도16호선)	신원면	덕산	중로	3	17	1,145	12	43,763	신원면 덕산리 산188	신원면 덕산리 359-3	거창군 고시 2008-43호 (2008.09.17)	사업기간 변경

2.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

- 주 소 :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
- 성 명 :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장

3. 사업기간

- 당 초 : 2011.11.04 ~ 2016.12.31
- 변 경 : 2011.11.04 ~ 2017.12.31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 : 붙임
(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)
5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·함양지사(☎055-940-553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

연번	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군	면	리			지적	편입	주소	성명	권리명	주소	성명	
1	거창	신원	덕산	산187-6	도로	30	30		거창군				
2	거창	신원	덕산	산188	도로	397	397		거창군				
3	거창	신원	덕산	산187-4	도로	494	494		거창군				
4	거창	신원	덕산	1526-1	도로	840	840		국(건설부)				
5	거창	신원	덕산	1389-1	도로	111	111		거창군				
6	거창	신원	덕산	1388-2	도로	598	598		거창군				
7	거창	신원	덕산	산189-4	도로	830	830		거창군				
8	거창	신원	덕산	1388-1	도로	6	6		거창군				
9	거창	신원	덕산	산189-5	도로	131	131		거창군				
10	거창	신원	덕산	1525-1	구거	272	272		국(농림수산부)				
11	거창	신원	덕산	1400-4	도로	309	309		거창군				
12	거창	신원	덕산	산191-4	도로	308	308		거창군				
13	거창	신원	덕산	1499-1	구거	243	243		국(농림수산부)				
14	거창	신원	덕산	359-3	도로	383	383		거창군				
15	거창	신원	덕산	산187-8	임야	756	756	진주시 동성동 201송병문	송병문				
16	거창	신원	덕산	산187-7	임야	238	238	진주시 동성동 201송병문	송병문				
17	거창	신원	덕산	1389-3	답	744	744	부산시 남구 광안동 497-20	김한욱				
18	거창	신원	덕산	1388-3	답	1,504	1,504	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355	김성욱				
19	거창	신원	덕산	산189-6	임야	1,388	1,388	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19-3 동방아파트 6-304	김진우				
20	거창	신원	덕산	1399-2	답	76	76	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295-14	김태웅				
21	거창	신원	덕산	1400-3	답	822	822	거창읍 상림리 800 이스텐빌딩 5층	김수봉				
22	거창	신원	덕산	1399-1	답	118	118	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295-14	김태웅				
23	거창	신원	덕산	산189-7	임야	506	506	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-232 금호파크빌-202	김수근				
24	거창	신원	덕산	산214	구거	67	67		국(농림수산부)				
25	거창	신원	덕산	산195-2	임야	850	850	덕산리 552	변종한				
26	거창	신원	덕산	산191-2	임야	5,565	5,565	덕산리 552	변종한				
27	거창	신원	덕산	산193-4	임야	3,296	3,296	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1235	김해김씨삼현파안의대종중				
28	거창	신원	덕산	산195-3	임야	2,505	2,505	덕산리 552	변종한				
29	거창	신원	덕산	산197-3	임야	4,998	4,998	진주시 상병동 759 상영아파트 1동 501호	변정규				
30	거창	신원	덕산	산198-4	임야	2,720	2,720	북상면 소정리 680	담양전씨소정인담공파중중				
31	거창	신원	덕산	산197-5	임야	978	978	덕산리 561	김두희				
32	거창	신원	덕산	산199-4	임야	3,340	3,340	서울 동대문구 묵동 233-70	남정태				
33	거창	신원	덕산	산200-3	임야	2,123	2,123	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50 한신아파트 109-1708	남정태				
34	거창	신원	덕산	산47-1	임야	388	388	경기도 부천시 소재구 송내동 575-12 리마빌 시-203	박정식				
								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56-5	박윤선				
								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55-46 신현대빌라트 1-201	김현민				
35	거창	신원	덕산	396-1	전	63	63	거창읍 중앙리 342-8	황화순				
36	거창	신원	덕산	361-1	전	482	482	덕산리 529	김타관				
37	거창	신원	덕산	360-1	전	369	36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 무지개마을 513-1603	서영완				
38	거창	신원	덕산	산48-4	임야	3,063	3,063	거창읍 중동 1192	조판술				
39	거창	신원	덕산	산45-6	임야	1,834	1,834	서울 마포구 서교동 347-14	이우대				
40	거창	신원	덕산	359-2	전	11	11		박희조				미등기
41	거창	신원	덕산	산45-8	도로	7	7		거창군				

거창군 고시 제2017-19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83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경상남도 고시 제1978-103호(1978. 03. 20)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소로2-8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17. 02. 20.

거 창 군 수

1. 사업개요

종류	사업명	위치		시행규모						시행위치		최초 결정일	비고
		읍	리	등급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시점	종점		
도시 계획 시설	도시계획도로 (소로2-83호선)	거창	중앙	소로	2	83	50	8.0	471.0	거창읍 중앙리 5-3	거창읍 중앙리 5-1	경고 1978-103호 (1978.03.20)	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
-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 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 예정일 : 2017. 12. 31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 적 (㎡)	편입면 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,983	471					
1	거창읍 중앙리	5-3	답	73	5	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81, 102호(지엔지씨티)	이진산			
2	“	403-2	묘	387	191	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2 대경넥스빌 105-102	주상한			
3	“	403-1	대	181	27	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62, 106동1205호	박순남			
4	“	402-16	대	7	7		거창군			
5	“	402-15	대	8	8		거창군			
6	“	5-5	답	47	47	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81, 102호(지엔지씨티)	이진산			
7	“	403-5	대	266	31	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46	강석이			
8	“	403-4	묘	14	5	대구 서구 중리동 120-4 동원빌리지 시동 101호	신기창외5인			
9	“	403	대	185	23	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03	이종갑			
10	“	410-3	대	196	4	주상면 연교리 1015	김성목			
11	“	402-9	대	153	121		거창군			
12	“	5-1	대	466	2	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102호(지엔지씨티)	이상조			

거창군 고시 제2017-20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97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경상남도 고시 제1978-103호(1978. 03. 20)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소로2-97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17. 02. 20.

거 창 군 수

1. 사업개요

종류	사업명	위치		시행규모						시행위치		최초 결정일	비고
		읍	리	등급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면적 (㎡)	시점	종점		
도시 계획 시설	도시계획도로 (소로2-97호선)	거창	중앙	소로	2	97	100	8.0	835	거창읍 가지리 401-7	거창읍 가지리 1698-5	경고 1978-103호 (1978.03.20)	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
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 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 예정일 : 2017. 6. 30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5,593	835					
1	거창읍 가지리	401-7	도	264	62		거창군			
2	"	401-1	전	182	82	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, 102동 603호(신흥아파트)	박인숙			
3	"	1698-1	도	127	29		국(국토교통부)			
4	"	463-6	전	29	11		거창군			
5	"	463-5	전	83	75	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, 102동 603호(신흥아파트)	박인숙			
6	"	209-5	전	415	1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, 807호 (재송동,아이에스타워)	주식회사 삼성			
7	"	209-2	전	832	273	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38-11	이창희			
8	"	211-1	과	77	55	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, 102동 603호(신흥아파트)	박인숙			
9	"	210	묘	541	149	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9길 47	임복기			
10	"	1698-11	도	43	1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, 807호 (재송동,아이에스타워)	주식회사 삼성			
11	"	218-2	과	67	2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, 807호 (재송동,아이에스타워)	주식회사 삼성			
12	"	210-1	도	104	15		거창군			
13	"	1698-5	도	850	43		국(국토교통부)			
14	"	215-5	도	1979	37		거창군			

거창군 고시 제2017-21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102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경상남도 고시 제1978-103호(1978. 03. 20)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소로2-102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17. 02. 20.

거 창 군 수

1. 사업개요

종류	사업명	위치		시행규모						시행위치		최초결정일	비고
		읍	리	등급	류별	번호	연장(m)	폭(m)	면적(m ²)	시점	종점		
도시계획시설	도시계획도로 (소로2-102호선)	거창	가지	소로	2	102	220	8.0	2,092	거창읍 가지리 299-1	거창읍 가지리 349-10	경고 1978-103호 (1978.03.20)	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
-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 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 예정일 : 2018. 12. 31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3,923	2,092					
1	거창읍 가지리	299-1	도	49	11		거창군			
2	"	300-1	도	56	44		거창군			
3	"	301-2	대	205	65	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23 101동 104호 (신정동,현대아파트)	이순례			
4	"	301-1	대	93	52	거창읍 가지리 304	정권수			
5	"	302	대	60	35	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9	이수용			
6	"	1719-9	도	3130	597		국(건설부)			
7	"	303	대	228	58	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9-4	정해수			
8	"	292-3	대	288	97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9	"	304	대	373	14	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13	김수길			
10	"	292-2	대	20	4	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24	학교법인 거창명륜학원			
11	"	304-1	도	34	34	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13	김수길			
12	"	292-1	대	40	2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13	"	305-1	대	215	89	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259, 302동 1004호 (감계힐스테이트 3차아파트)	이상학			
14	"	289-2	대	360	3	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 22, 102동 905호 (옥동,현대대륙아파트)	윤수재			
15	"	305-2	대	94	5	경남 통영시 무전1길 23, 103동 1202호 (무전동,한진로즈힐비치)	박훈			
16	"	288-3	대	397	21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17	"	305-3	전	38	35	경남 통영시 무전1길 23, 103동 1202호 (무전동,한진로즈힐비치)	박훈			
18	"	288-4	대	53	36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19	"	287	대	192	2	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24	최희자			
20	"	349-14	임	358	180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21	"	349-9	임	1521	310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22	"	285	전	4175	96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23	"	349-10	전	1944	302	부산시 총무로 4가 5	경상남도 향교재단			

거창군 고시 제2017-22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2-220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거창군 고시 제1986-5호(1983. 02. 11)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 :소로 2-22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17. 02. 20.

거창군수

1. 사업개요

종류	사업명	위치		시행규모						시행위치		최초결정일	비고
		군	면	등급	류별	번호	연장(m)	폭(m)	면적(m ²)	시점	종점		
도시계획시설	도시계획도로 (소로2-220호선)	거창	위천	소로	2	220	367	8.0	3,053	위천면 장거리 453-4	위천면 장거리 421-2	거고 1986-5호 (1986.02.11)	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거창군수(도시건축과장)
-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착수 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 예정일 : 2018. 12. 31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22,156	3,053					
소계	-	-	-	13,338	1,808					
1	위천면 장기리	453-4	답	89	2		거창군			
2	"	453-2	도	69	4	북상면 갈계리	임유송			
3	"	628	구	740	24		국(농수산부)			
4	"	452-2	도	83	35		국(건설부)			
5	"	452-3	답	77	19		거창군			
6	"	452-1	답	373	63	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3 대곡강산타운 409-1502	배수길			
7	"	623-1	도	1496	57		국(건설부)			
8	"	443	대	443	58	울산 남구 옥동 162 대륙2차현대아파트 101-805	정현숙			
9	"	444	대	423	177	울산 남구 옥동 162 대륙2차현대아파트 101-805	정현숙			
10	"	445-1	대	10	9	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475번길 13,201호 (삼정동,경아하이츠빌라)	박순옥			
11	"	442	전	813	238	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475번길 13,201호 (삼정동,경아하이츠빌라)	박순옥			
12	"	441	대	441	38	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63	오한용			
13	"	432-1	답	1809	312	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73-7	정용상			
14	"	437-7	대	145	1	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70	임문옥			
15	"	435-1	답	4294	197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451	김수현			
16	"	437-6	대	302	93	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49, 2동 413호(용호동,삼성맨션)	정봉식			
17	"	437-5	대	218	98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 달동 163 승리아파트 아-403	이성숙			
18	"	437-2	대	200	80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	정기균			
19	"	431-3	대	826	2	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31-3	대한예수교장노 회(고신)위천교회			
20	"	437-8	대	487	301	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31-3	대한예수교장노 회(고신)위천교회			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2. 22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1길 282 외 2건(부여2건, 폐지1건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○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315-4	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1길 282	2009-04-01	2017-02-22	성 재 북쪽에 자리하게 되 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2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368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원봉계길 70-35	2009-04-01	2017-02-22	한말 이곳에 살면서 동학혁 명 때 치안유지에 공이 있 었다는 하종호의 호 봉서의 새봉자를 따서 붙여진 자연 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
○도로명주소폐지

일련 번호	폐지도로명주소	고 시 일		폐지사유	비고
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원신기길 76	2009-04-01	2017-02-22	건물철거	

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21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: 「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 일부 부지에 대하여 구역내 도로경계면을 기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행정구역 변경(법정동)
 -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(27필지 중 16,405㎡) (안 별표 1)

4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(참조: 행정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[940-3169], 전화 [940-3184] 또는 E-mail[bizarrebaby@korea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안 1부.

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17. . .
제 출 자	행정과장

1. 제안 이유

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 일부 부지에 대하여 구역내 도로경계면을 기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구역 변경(법정동)

-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(27필지 16,405㎡) (안 별표 1)

※ 주민 의견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2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

(나) 예고결과: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(제2조 관련)

읍·면명	리 명 칭	구 역
거창읍	김천리	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, 47-2번지를 제외한 지역,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-1, 1303-2, 1303-3, 1303-5, 1304-8, 1463-10, 1473-15번지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230, 230-1, 231-1, 231-2, 231-3, 231-4, 231-10, 305, 305-1, 305-2, 305-3, 305-4, 305-29, 305-32, 305-33, 305-34, 305-35, 354-41, 305-42, 305-43, 305-44, 305-45, 438-2, 438-3, 441-2, 441-3, 455-4 27필지 중 16,405㎡ 제외
	송정리	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~산109, 산110-1, 산118, 산119-5, 산120, 산121, 산122, 산144, 1004~1047, 1085~1087, 225-2, 1059-2~1059-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230, 230-1, 231-1, 231-2, 231-3, 231-4, 231-10, 305, 305-1, 305-2, 305-3, 305-4, 305-29, 305-32, 305-33, 305-34, 305-35, 354-41, 305-42, 305-43, 305-44, 305-45, 438-2, 438-3, 441-2, 441-3, 455-4 27필지 중 16,405㎡ 포함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군의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

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거창군 의회 의장

주식 매각 공개목록

소 속	거창군의회		직위(직급)	군의원	성 명	박희순
본인과의 관 계	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		매각 또는 신탁 여부	매각 또는 신탁 금액 (천원)	매각 또는 신탁 일자	매각 또는 신탁 회사
	발행인	보유주식수				
배우자	휴젤	180	매각	62,797	2017.2.8	매각